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규약

제정 2007.03.30.
개정 2007.08.23.
개정 2009.01.29.
개정 2009.08.19.
개정 2010.01.19.
개정 2011.01.26.
개정 2012.05.09.
개정 2014.03.12.
개정 2014.06.25.
개정 2015.03.25.
전부개정 2018.02.20.
개정 2019.07.11.
개정 2022.09.30.
시행일 2023.08.04. 전부개정 2023.07.20.

제 1 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이 규약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6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Seoul Para Sports Association ‘약칭 SPSA’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하여 건강증진과 통합사회 가치를 실현하며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이하 ‘가맹단체’라 한다.)를 관리·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의 체육·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장애인체육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장애인체육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와 자치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3. 장애인생활체육 교실,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지원·대회 개최·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전개
4. 시·도 및 해외 도시간의 장애인체육교류
5.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주관, 승인한 사업에 참가 및 주최, 주관, 후원, 지원 등
6. 선수·지도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촉진
7. 체육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8. 장애인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9.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동·하계, 학생) 서울특별시선수단 훈련 및 참가
10. 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장애인체육의 육성 및 보급
11. 특수학교·통합학급의 체육활동지원 및 장애학생 체력 향상과 통합체육수업 보급
12. 삭제
13. 장애인체육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운영
14. 장애인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 각종 간행물 발행
15. 장애인 체육정책 실현 및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관계기관에 건의·자문
16.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및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 제5조(조직)** ①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종목별 경기단체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이하 “가맹단체”라 한다.)는 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할 수 있으며, 정가맹단체, 준가맹단체, 인정단체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하고자 할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5조에 따라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이하 “중앙 가맹단체”라 한다.)로부터 우선 서울특별시 지부로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 가맹단체 중 종목별 경기단체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장애인체육회가 가맹 승인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가맹단체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가맹단체’는 정가맹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장애인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로써 가맹을 확정된 단체를 말한다.
 2. ‘준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준가맹을 승인받아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단체를 말한다.
 3. ‘인정단체’는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해당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 ④ 자치구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의 지회로 하며 장애인체육회의 정가맹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⑤ 가맹단체와 자치구장애인체육회의 설립요건 및 절차, 운영, 탈퇴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 ⑥ 제2항에 따라 중앙 가맹단체 중 종목별 경기단체가 없어 장애인체육회로부터 가맹승인을 받은 단체는 추후 중앙 가맹단체를 결성할 경우 서울특별시 지부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6조(권리와 의무) 가맹단체와 자치구장애인체육회는 다음과 같이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①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② 장애인체육회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③ 가맹단체와 자치구장애인체육회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당해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 및 탈퇴) ① 가맹단체가 되려는 단체는 장애인체육회 가맹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장애인체육회는 가맹 및 탈퇴에 관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가맹 · 탈퇴규정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한다.
- ③ 삭제

제3장 대의원총회

제8조(구성) ① 총회는 제5조제3항의 각 정가맹단체 장으로 구성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해당단체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장이 총회 5일 전에 장애인체육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인 지명 통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기능) ① 총회는 장애인체육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장애인체육회 해산 및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부회장, 사무처장, 당연직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제외)
 3.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회장 제외)
 4. 정가맹단체의 가맹, 강등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규약 및 제 규정이 대의원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 ② 대의원총회가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전부 또는 일부의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임원 전부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각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 1년 이상 경과한 임원에 대해서만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임원의 해임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제의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2항제2호에 따라 임원의 해임이 의결되었을 때 당해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10조(소집) ① 장애인체육회의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장애인체육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4. 제27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총회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 소집은 개최 7일 전에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대의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집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다만 국가적인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11조(의장) ①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수석 부회장, 부회장(회장이 선임 시 정한 순서)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사 또는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 회장은 의장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출석대의원의 의결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의장은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2항에 의한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정족수) ①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삭제
- ③ 삭제

④ 삭제

제13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자신이 장애인체육회와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제14조(총회 운영규정) 총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15조(구성) 장애인체육회 이사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장애인체육회 회장
2.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3.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4. 장애인체육회 이사

제16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부회장 선임 및 사무처장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7. 준가맹단체·인정단체의 가입승인 및 제명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사항

제17조(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수석부회장, 부회장(회장이 선임 시 정한 순서)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제27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해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⑤ 이사회 소집권자의 기피에 의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출석이사 의결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당연직 공무원(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 담당 국장급 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담당 국장급 공무원)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이사회에서만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19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제16조의 각 호의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차기 이사회에 이를 승인 받아야 한다.

제20조(이사회 운영규정)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임원

제2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장애인체육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9인 이내(이중 회장이 지명한 수석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3. 사무처장 : 1인
4. 이사 : 20인 이상 33인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포함)
5. 감사 : 2인

제22조(회장의 선출) 서울특별시장은 당연직 회장이 된다.

제23조(부회장의 선임) 부회장은 이사회 의 결의 를 얻어 회장이 선임하고 부회장 중 1인은 서

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24조(사무처장의 선임) 사무처장은 이사회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25조(이사 및 감사 선임)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 모두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이사 선임 권한을 총회의 의결로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 담당 국장급 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담당 국장급 공무원,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 이사 중 3인 이상은 장애인선수 출신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④ 감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총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은 임원에 선임 될 수 있으나 재적이사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회장의 선임에 대하여도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여성 임원이 재적임원수의 30% 이상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서울특별시장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이사(부회장, 사무처장 포함)의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제 25조제2항에 해당하는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하여 자동 연임된다.

④ 삭제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의 증원으로 추가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사무처장, 이사,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⑦ 제2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 기간에는 부회장 재임 기간도 포함된다.

⑧ 임원의 임기가 만료 후에도 후임자 취임하기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⑨ 임원의 임기 제한에 있어 보선된 임원의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장애인체육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수석부회장, 부회장(회장이 선임 시 정한 순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유고시에는 부회장의 직무를 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회 재산을 감사하는 사항

2. 이사회 및 총회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 회장,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를 발견하여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사항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⑥ 임원이 장애인체육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임원이 장애인체육회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가맹단체 또는 장애인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체육회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장애인체육회 임원으로서 직무도 정지된다.

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

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④ 임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29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회장 및 사무처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가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제출 즉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임서 제출과 관계없이 당연히 사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제28조에 해당할 경우
 2. 가맹단체 및 자치구장애인체육회의 대표 또는 임원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한 경우

제30조(임원의 징계) 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체육회 임원(회장 제외)에 대하여 징계 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징계 요구를 따른다.

- 1.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장애인체육회의 시설운영과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 장애인체육회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 2. 친족 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 4. 장애인체육회의 규정을 위반한 자
- ② 제1항에 따라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 임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체육회 임원에 대해 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제31조(임원의 보수) ①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사무처장은 처무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하며 별정직으로 한다.
- ③ 회장은 사무처장 등 상근 임원 궐위 시 비상근 임원 중 한 명을 지명하여 궐위 기간 동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처무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각종 위원회

제32조(설치) ① 장애인체육회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소관 분야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 위원회로서 법제상별위원회를 둔다. 이외에 사업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1. 삭제
2. 자문위원회
3. 삭제
4. 전문체육위원회
3. 생활체육위원회
6. 임원심의위원회
7. 선수위원회

② 기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가맹단체

제33조(가맹단체 조직 및 구성) ① 가맹단체는 자치구 가맹단체로 조직한다.

②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운영규정 제35조제5항에 따른 징계요구시 장애인체육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중앙 가맹단체에 통보한다.

③ 가맹단체 회장은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다만, 총회를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할 수 있다.

제34조(가맹단체 임원승인 및 취소) ① 가맹단체의 임원은 중앙 가맹단체장의 승인동의서를 첨부하여 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회장은 승인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승인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35조(강등 및 관리단체 지정) ① 가맹단체 강등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② 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중앙 가맹단체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맹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회의 규약 및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
2. 장애인체육회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3. 60일 이상 가맹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4. 당해 종목을 소관하는 중앙 가맹단체와 국제장애인경기연맹 또는 해당 영역의 국제 장애인체육기구와의 분쟁
5. 가맹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6.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
7. 가맹단체 평가에 따라 부진단체로 3회 지정시
8. 경기력향상을 위해 장애인체육회의 직접 육성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가맹단체의 임원은 관리단체 지정된 날에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
 - ④ 관리단체로 지정된 장애인체육회의 정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의 총회 개최 시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 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운영규정’ 제35조의2에 따라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경우, 가맹단체에게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후 그 결과를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해당 중앙 가맹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라 가맹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될 경우 장애인체육회 관리단체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36조(규정) 이 규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가맹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운영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자치구장애인체육회

제37조(자치구장애인체육회 조직 및 구성) ① 자치구장애인체육회는 자치구가맹단체를 회원으로 둔다.

- ② 자치구장애인체육회가 소재한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자치구장애인체육회의 당연직 회장이 된다.
- ③ 부회장 중 1인은 자치구 교육장이 되고 기타는 회장이 지명한다.
- ④ 자치구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에 관해서는 이 규약을 준용한다.
- ⑤ 이 규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자치구장애인체육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은 장애인체육회 구 지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38조(가입 및 탈퇴) ① 자치구장애인체육회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자치구장애인체육회 가입은 장애인체육회 회장이 승인한다.
- ③ 자치구장애인체육회가 탈퇴하기 위해서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탈퇴 사실은 차기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9조(자치구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승인 및 취소)** ① 자치구장애인체육회의 임원(구청장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 예외로 한다.)은 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장애인체육회장은 자치구장애인체육회 임원 승인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승인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9장 재산과 회계

- 제40조(재산의 구분)** ① 장애인체육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체육회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1조(재산의 관리) 다음 각호의 장애인체육회 재산을 양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하거나 장애인체육회의 재정 또는 업무에 부담을 주거나 장애인체육회의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2.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주요 재산

제42조(재원) 장애인체육회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소유동산 및 부동산
2. 국비(국고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및 기금
4.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원금
5.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6. 기부금 및 찬조금
7. 사업수입금
8. 기타수입금

제43조(잉여금의 처리) 장애인체육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4조(회계연도) 장애인체육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5조(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① 장애인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③ 장애인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기금 및 적립금) ① 장애인체육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47조(회계감사 등) 장애인체육회의 회계감사는 연1회 실시한다.

제48조(가맹단체, 자치구장애인체육회 감사 및 징계) ① 장애인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맹단체와 자치구장애인체육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 할 수 있다.

- ②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해태가 있는 임직원에게 대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의 징계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법제상별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④ 장애인체육회는 가맹단체 및 자치구장애인체육회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장 사무처

제49조(사무처) ① 장애인체육회는 사무집행을 위한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 ② 사무처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장애인체육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처 직원으로 신규 채용할 수 없다.
- ④ 직원의 임면은 인사규정에 따르며,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⑤ 사무처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단 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
- ⑥ 직원은 중앙 가맹단체(산하지부 포함) 및 자치구장애인체육회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0조(사무처 운영규정 등)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51조(경영공시) ① 장애인체육회는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등을 공시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 집행내역, 외부감사결과, 관련규정과 그 외 장애인체육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11장 보 칙

제52조(규약개정) ① 장애인체육회의 규약 개정은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지회 운영규정에 따라 개정된 장애인체육회 규약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승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53조(규정 제·개정 및 해석) ① 자치구장애인체육회는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구 지회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단체 규약(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회의 규약은 가맹단체 및 자치구장애인체육회의 규약(정관)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며, 당해 단체 규약(정관)이 이 규약과 상이할 경우 반드시 이 규약에 따라야 한다.

③ 가맹단체 및 자치구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체육회 규약에 규정한 조항을 준용할 수 없거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규약(정관)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제1항 외에 자치구장애인체육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해 단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구 지회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개정된 자치구장애인체육회 규약(정관)은 장애인체육회장이 승인한 날부터 유효하며, 개정이 있을 때 마다 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제한사항) 가맹단체 및 자치구장애인체육회가 제6조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6조제1항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5조(관련당사자간의 분쟁해결) 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중앙 가맹단체 및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와 자치구장애인체육회 구성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18.2.20.>

제 1 조(시행일) 이 규약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7.11.>

제 1 조(시행일) 이 규약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9.8.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9.30.>

제 1 조(시행일) 이 규약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2022.10.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8.04.>

제 1 조(시행일) 이 규약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장애인체육회 제규정은 이 규약에 따라 개정하고 개정 전까지 이 규약과 상이한 제규정은 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